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 번	안 호	35
--------	--------	----

제출년월일 : 199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 정 이 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4,951호, '95. 7. 26.)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회의수당 1년분 초과불가)
-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총무처훈령 제153호인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함(안 제3조제2항).
-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폐질등급(제1급~제14급)을 적용하고, "상해"의 기준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경우로 함(안 제5조).
- 보상금 지급대상별 "청구자"를 지정하고, 청구자는 일정한 기한내에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함(안 제6조).

- 보상금 지급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교육감이 결정하여 지급함(안 제7조).
- 도교육청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고, 동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토록 함.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교육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교육감이 위촉함(안 제9조).
 -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함(안 제10조).
 - 심의회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함(안 제14조).
 - 심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자료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총무처 훈령 제153호, '91. 6.21.)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교육위원이 회기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 또는 그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교육위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채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육위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교육감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위원 1인
2. 의무직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장중 1인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